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8월 4일, 의사상자 기억의 날 지정 >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684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8월 4일, 의사상자 기억의 날 지정	2

I. 개요

1.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68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기웅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4. 29.
- (3) 회 부 일 : 2026. 4.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국민적으로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사상자 사례는 발생 시기와 장소, 경위가 다양하여 특정한 사건일을 기준으로 기념일을 정하기 어려운 만큼,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의사상자를 함께 기릴 수 있는 상징적 기준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8월 4일, 의사상자 기억의 날 지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기리며,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7조의3(의사상자 기억의 날) ①</u> <u>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기리며,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현행법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됨.¹⁾

- 현행법이 시행²⁾된 이후 2026년 5월까지 의사상자 인정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자는 551명, 의상자는 355명이 인정되었음.

< 연도별 의사상자 인정 현황 >

(단위: 건)

연도	'71~'18	'19	'20	'21	'22	'23	'24	'25	'26.5월	계
계	789	18	11	21	17	24	10	11	5	906
의사자	508	8	5	10	2	8	3	6	1	551
의상자	281	10	6	11	15	16	7	5	4	355

자료: 보건복지부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5.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1970.8.4. 제정, 1970.8.4. 시행)

□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일정한 보상금과 더불어 영전의 수여 또는 기념사업 등이 지원³⁾되나, 기념동상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 국가 차원에서 기념일을 규정하거나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이 법이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념함으로써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음.

□ 현재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2]⁴⁾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영전의 수여 등)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를 통해 기념일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민 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의의가 큰 날 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등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되거나 그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이나 개별 이익단체에만 국한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의 ‘의사상자 기억의 날’은 그 자체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기념일의 지정기준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의사상자의 사례는 발생 시기와 장소, 경위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모든 의사상자를 함께 기릴 수 있는 상징적 기준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기념일의 날짜를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날인 8월 4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와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의사상자 기념일 지정 필요성에 공감함.

문 의 처
02)6788-5497